

2023

한 눈에 알아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운영 가이드북



CONTENTS

2023 한 눈에 알아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운영 가이드북

I	한 눈에 알아보는 심사평가 절차	02
II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준비 및 운영의 이해	04
	1. HRD-Net 행정시스템 이용 신청 방법	04
	2. 실시가능직종의 정의 및 승인절차	05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06
	4. 원격훈련과정 심사	10
	5-1.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13
	5-2.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 (사업주훈련)	15
	6. 훈련이수자평가	17
	7. 부정훈련관리	20
III	관련 법규 및 용어	23
IV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안내	26

※ 본 자료의 내용은 2022~2023년도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므로,
차년도 운영 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한 눈에 알아보는 심사평가 절차

기관설립



심사평가 신청 전
(상시)

훈련시설 및 장비 등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HRD-Net 가입



심사평가 신청 전
(상시)

www.hrd.go.kr
회원가입(훈련기관)

신청접수 및 참여



심사평가 공지 시
(사업별 상이)

지정기간 내 신청,
사업별 절차 진행

계획공고 확인



심사평가 공지 시
(사업별 상이)

참여희망하는 심사평가
계획공고 확인(자격, 일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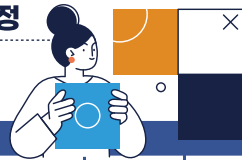
결과 확인



심사평가 공지 시
(사업별 상이)

평가시스템으로 결과 확인
(등급, 적/부, 선정여부 등)

적합(선정)과정 운영



결과발표 이후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고용센터로 '실시신고' 후
과정운영 개시

※ 그 외 'NCS 확인강사 등록',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참여', '훈련기관 역량강화 교육(직업훈련제도, NCS 등) 참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수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등록 (관리번호 발급)



심사평가 신청 전 (상시)

HRD-Net 행정시스템
이용 신청 및 관리번호 발급

실시가능직종 신청



심사평가 신청 전 (상시)

기관의 전문분야를
NCS 직종으로 신청, 승인

행정지원/심사평가 시스템 설치

심사평가 신청 전 (상시)

HRD-Net 시스템에서
2종 시스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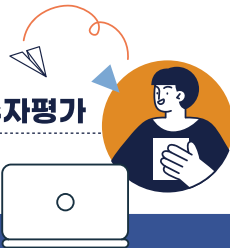
운영성과 관리



훈련운영(종료) 전후

직종(과정)별 취업률, 수료율 등
운영성과 관리

훈련이수자평가 참여



별도 공고 확인

종료 예정인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의
성취수준 평가 및 관리

II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준비 및 운영의 이해

01 HRD-Net 행정시스템 이용 신청 방법

직업훈련기관 등록을 위한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및 전산 가입절차

www.hrd.go.kr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서비스 신청서 작성



훈련기관

고용보험 가입정보, 훈련기관
세부사항 등 주요정보 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훈련기관 유형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직업훈련기관 등록 승인 및
훈련기관관리번호 발급



심평원 및 관할 고용센터

훈련기관의 신청정보를
심평원에서 사전검토 진행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승인 및
훈련기관관리번호(9자리) 발급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훈련기관

훈련기관 인증평가, 과정심사 등
심사평가 신청, 참여 가능

1. HRD-Net에서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경로 HRD-Net(www.hrd.go.kr) → 회원가입 → 훈련기관 회원 선택

2. 공인인증서 등록

경로 로그인 → 나의 정보 → 회원서비스 관리 → 공동인증서 등록/변경

3. HRD-Net 행정시스템 이용신청

경로 로그인 → 나의 정보 → 회원서비스 관리 → 행정지원 이용신청 → 행정시스템 이용신청

4. HRD-Net 접속 후 심사평가시스템* 다운로드 및 메뉴 활용

***다운로드 경로** HRD-Net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나의 정보 → 행정지원 이용신청 →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자료 제공 및 문의

문의사항	문의처	
HRD-Net 전산 오류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직업훈련기관 승인 (훈련기관관리번호 발급 등)	관할고용센터	www.workplus.go.kr
		☎ (국번없이) 1350
	직업능력심사평가원	www.ksqa.or.kr
		☎ 1644-5113

02

실시가능직종의 정의 및 승인절차

"훈련기관 유형에 따른 제출 증빙자료와 시설유형, 교육과정, 교육적 목적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검토"

실시가능직종 정의 및 승인 절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이 과정 심사 신청을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훈련직종 (NCS 소분류)

수행 단계	수행 사항	수행 주체
1 실시가능직종 신청 (신규/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가능직종 NCS 분류 선택 및 제출서류 첨부 ※ 반려 시, 기간 내 보완 가능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 	훈련기관
2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관이 신청한 직종적정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 승인/반려/현장조사 검토(필요 시)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3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승인/반려 	지방고용 노동관서

※ 누리집 <https://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훈련기관평가 · 2023년도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 참고

훈련기관 유형에 따른 제출 증빙자료와 검토사항

훈련기관 유형	제출 증빙자료	검토사항	
지정직업 훈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6.30. 이후 지정신청(변경지정) 시 승인받은 훈련직종(NCS 직종) 자동연동 및 별도 신청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고용센터 검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 학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전공)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평생 교육 시설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 편성표(교육지원청 직인 포함) *참고: 교육과정 편성표 내 교육지원청 직인이 없으면, 교육과정편성 수리 공문(교육지원청) 추가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학교 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공문(교육부) 등 ·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육과정 신고 공문 등(교육부 공문,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기관정보관리-학습과정' 캡처화면 등)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참고: 학원에서 자체 발행한 교습비 등 게시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타법령에 따른 직업 훈련시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관 지정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서 또는 법령 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소속 회사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0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 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건전성, 훈련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관련 법령 및 고시

-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 훈련시설 유형 중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사업주 자체훈련만 가능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법령 관련 교육만 심사 신청 가능함

유의사항

- 심사평가 신청기관은 HRD-Net 가입(등록)과 지방노동고용관서로부터 직업훈련기관으로 승인되어 훈련기관 관리번호(9자리) 발급이 완료된 기관이어야 함
- 과정심사는 실시간능직중(HRD-Net) 및 NCS 확인강사를 승인받은 직종만 신청 가능함
 - ※ (NCS 확인강사 신청 및 승인절차) HRD-Net(www.hrd.go.kr)에 훈련교·강사 자격, 경력 등의 정보 등록 → 능력개발교육원 승인(40점 이상) 및 NCS 확인강사 배정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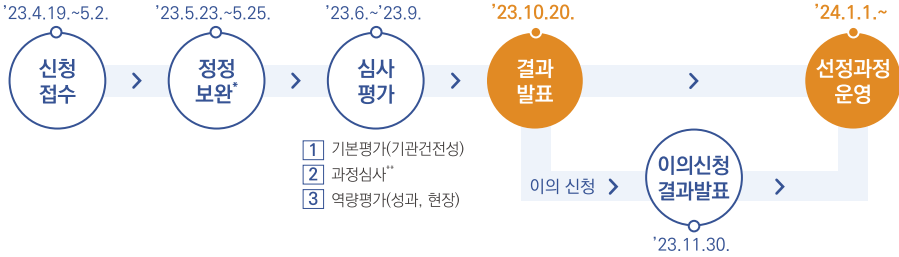
- 2024년도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훈련기관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서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하려는 훈련기관

기관 구분	훈련 유형
집체 훈련기관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일반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연계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포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원격 훈련기관	·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공공직업 훈련시설	·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기존 인증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 받은 기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3월 예정)
- 매년 1회, 4~5월경 신청 및 접수 진행(2023년은 4.19 ~ 5.2까지 접수 예정)

추진 절차



*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시설, 장비, 정원,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 총 7개 항목 및 재정건전성 평가자료 정정에 한하며, 훈련과정 회수 및 훈련과정명, 목표, 훈련비 관련 항목 등 정정·보완 가능 항목을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하므로 신청기한 내 입력 주의

** 원격훈련 및 특화훈련 과정심사는 추후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용어정의

- | | |
|------------------------------------|------------|
| ① 기본평가: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 | 제12조제1항 |
| ② 과정심사: 기본요건심사 + 훈련과정적합성심사 + 훈련비심사 | 제19조, 제20조 |
| ③ 역량평가: 훈련성과평가 + 훈련실시역량평가(현장평가) | 제12조제1항 |
| ④ 인증평가: 기본평가 + 역량평가 | 제12조제1항 |

심사평가 방법

- 기본평가, 과정심사 및 역량평가(성과, 현장)로 구분

기본평가*

훈련기관의 기본적인 법규위반 여부(준법성)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여 적합·부적합 결정
 * 재정건전성 감정 확인 후 정정·보완기간(2023.5.23.~5.25.) 내에 추가 서류 제출

과정심사 및 역량평가

과정심사 및 역량평가는 훈련실적의 성과(취업률·고용유지기간·만족도 등), 과정적성 및 현장검증(시설·장비, 교·강사 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기관 인증등급 부여, 훈련과정 승인

- 기본평가, 과정 및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적합과정 선정 및 훈련기관 인증등급 판정
- 훈련기관 인증등급 및 과정심사 결과는 **2023.10.20.(금)에 일괄 발표** 예정

심사평가 항목

실적산정기간

• 2021.1.1. ~ 2022.12.31. (2개 연도)

※ 실적산정기간이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년 단위(매년 1.1.~12.31.) 기준으로 실시인원, 취업인원 등을 산출하고, 2년 실적을 합산하여 일반취업률, 개설률 등을 산정

심사평가 항목

•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에 대해 각 평가항목별 세부 지표에 따라 심사평가

구분	평가항목(내용)	판정 또는 배점	
기본평가(기관건전성)	·준법성, 재정건전성, 기타(사회적 물의 등)	적합/부적합	
과정심사	기본요건심사	·직종분류, 편성 요건, 신청제한, 필수내용 편성 여부 심사	적합/부적합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	·과정적정성 심사	
		·원격 콘텐츠 심사(혼합훈련 대상)	
	·성과적정성 심사(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훈련)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실업자 국기)			
훈련비 심사	·고급 및 특화 훈련과정의 훈련비 적정성 심사	적정/조정	
역량평가 (100점)	성과평가	·집체 실적보유기관의 훈련성과 평가 - 일반취업률, 고용유지기간, 수요자만족도 등 ※ 원격 실적보유기관은 기준과 동일하게 60점 적용	70점 (신규기관 제외)
	현장평가	·실시가능직종 중 신규 직종 등을 포함한 최대 3개 직종 ·훈련운영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3개 항목 ※ 원격훈련기관은 기준과 동일 지표 및 배점 적용	30점 (신규기관 100점)

심사평가 결과

훈련기관 인증등급

기본평가	역량평가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① 훈련성과,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및 우수훈련기관 요건 충족	① 우수훈련기관	-
	②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② 3년 인증	1년 인증
	③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③ 인증유예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④	인증유예	인증유예

※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훈련성과 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우수훈련기관은 BHA(베스트직업훈련기관) 공모 신청 가능(해당 공모 참조)

※ 원격훈련 신규기관의 경우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유예로 판정

📌 훈련과정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 판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의견을 수렴하여, 과정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조건부 적합 포함) 또는 부적합 판정
- 조건부 적합으로 선정된 훈련과정은 해당 조건을 보완한 후 '조건부 심사'를 신청하여 최종 '적합'으로 판정되어야만 훈련실시 가능
- 2023년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최종 부적합 판정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과정심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부적합 판정

추진일정(안)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예정)
1. 심사평가 계획 공고	·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22.9.30.
2. HRD-Net 심사시스템 사전 오픈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심사평가 시범 사용 ※ 시범 기간 중 입력된 내용은 임시저장이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최종 제출 완료	'23.4.12.~
3. 심사평가 신청 접수	·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접수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신청 ※ 원격훈련 및 특화과정은 별도 공고에 따라 개별 신청	'23.4.19.~ '23.5.2.
4. 신청서 및 재정건전성 서류 정정·보완	· (신청서 보완)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시설, 장비, 정원,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등 총 7개 항목의 신청 정보에 대하여 정정 가능 ※ 자체평가보고서 등 현장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정정 불가 · (재정건전성 서류 보완) 신청기간 중 납세 또는 신용수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기관은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보완 서류 제출	'23.5.23.~ '23.5.25.
5. 심사평가 결과 발표	·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심사 결과 발표	'23.10.20.
6. 이의신청 접수	· 결과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23.10.20.~ '23.10.26.
7. 조건부 심사 신청	· 훈련과정 조건부 항목 보완 신청	'23.10.20.~ '23.12.31.
8. 이의신청 결과 발표	· 이의신청 결과 발표	'23.11.30.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관련 문의

문의처

훈련기관평가센터	www.ksqa.or.kr	소통마당 > 훈련기관평가 > Q&A
	연락처	☎ 1644-5113 연결 후 1번, 02-6943-4010
	이메일	✉ ctoa1@koreatech.ac.kr

04

원격훈련과정 심사

“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심사를 통하여 원격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새로운 훈련방법 및 첨단훈련매체 도입을 활성화하여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기반 마련”

관련 법령 및 고시

-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등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대상

- 재직자 원격훈련과정, 실업자 원격훈련과정

훈련대상	훈련사업	원격훈련 유형
재직자 훈련	사업주훈련(위탁/자체)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근로자)	· 인터넷원격훈련 · 우편원격훈련 · 스마트훈련 · B/L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 기업대학 등	· 인터넷원격훈련
실업자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 인터넷원격훈련 · B/L

※ 세부심사계획 등은 “2023년도 원격훈련과정 공모계획 공고” 참고

추진 시기 및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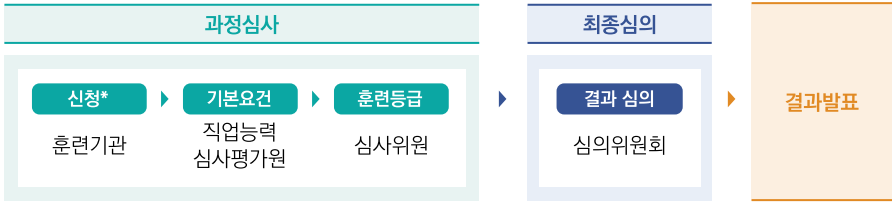
- 과정심사 연 7회, 콘텐츠 등록 및 변경심사는 수시 신청 가능

’23년 원격훈련 과정심사 일정

심사차수	신청 시작	신청 마감	결과 발표	
			C등급	A·B등급
1차	1.16(월)	1.20(금)	2.6(월)	2.17(금)
2차	2.22(수)	2.28(화)	3.14(화)	3.27(월)
3차	3.30(목)	4.5(수)	4.20(목)	5.4(목)
4차	5.29(월)	6.2(금)	6.20(화)	7.4(화)
5차	7.26(수)	8.1(화)	8.18(금)	9.1(금)
6차	10.2(월)	10.11(수)	10.25(수)	11.8(수)
7차	11.27(월)	12.1(금)	12.15(금)	12.29(금)

※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심사 신청을 마쳐야 함

과정심사 절차



* 훈련기관은 콘텐츠 소유기관의 '등록 콘텐츠'를 활용하여 심사 신청

과정심사 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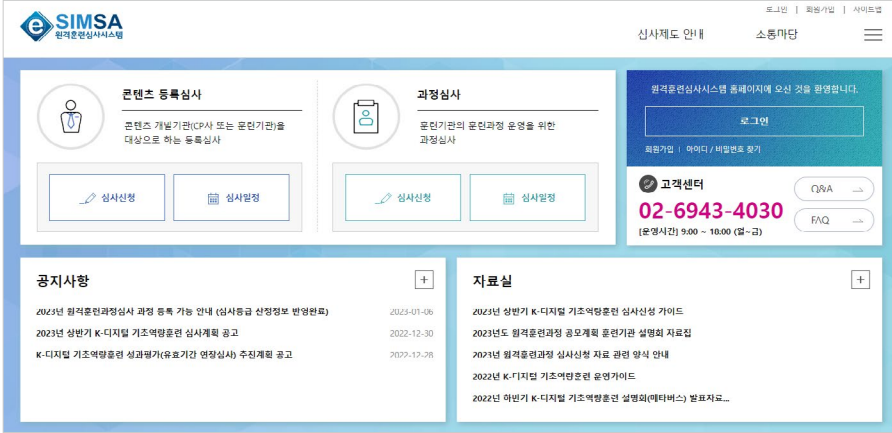
- **기본요건 심사** : 훈련과정에 대한 ①심사신청 자격 및 지원적정성 ②행정처분 해당여부 ③동일과정 여부 ④교·강사 자격요건 ⑤학습 진행 가능여부 ⑥자체개발 여부 ⑦수료기준 ⑧최소 훈련시간 등 8개 항목의 적정성 심사
- **훈련등급 심사** : 훈련과정에 대한 ①훈련시장의 공급실태 ②콘텐츠 자체개발 및 최신성 ③산업·기업현장성 반영 과정 ④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설계 및 학습활동 ⑤개별화·맞춤화 수준진단 및 학습지원방식 ⑥평가방법 및 피드백 적정성 등
- 총점 80점 이상 A등급, 60점 이상~80점 미만 B등급, 60점 미만 C등급

콘텐츠 등록

- (신청자격)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진 기관(콘텐츠 개발사, 유통업체, 훈련기관 등)
- (등록절차)



- (심사대상) 콘텐츠 등록코드 발급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콘텐츠
 - * 훈련기관은 해당 등록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훈련 과정심사 신청 가능
- (심사일정) 연중 수시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발표
 - * 콘텐츠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심사일정(30일)을 초과할 수 있음
- (심사기준) 콘텐츠의 ①지원적정성 ②원격훈련적정성 ③과정구분 분류 ④NCS 직종분류 및 적용여부 ⑤훈련분량 적정성 ⑥훈련내용의 적정성 ⑦훈련생 평가적정성 등 심사




-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 및 결과확인
 - [콘텐츠 등록심사], [과정심사] 메뉴 이용
- 원격훈련과정심사 매뉴얼(자료집) 다운로드
 - [소통마당] > [자료실] > '2023년도 원격훈련과정 공모계획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게시물 확인
 - ※ 상기 내용은 제도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원격훈련심사기준 및 시스템 사용방법은 원격훈련과정심사 매뉴얼(자료집) 참고

관련 문의

문의내용	구분	문의처
과정심사 (원격훈련심사시스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	www.ksqa.or.kr
		www.e-simsa.or.kr
		이메일
		☎ 1644-5113 연결 후, 2번, 02-6943-4030
과정 인정	사업주훈련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근로자훈련 실업자훈련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HRD-Net	한국고용정보원
		www.hrdkorea.or.kr
		☎ 1644-8000
		www.work.go.kr/ jobcenter
		☎ (국번없이) 1350
		www.hrd.go.kr
		☎ 1577-7114
원격훈련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관리부	emon.hrdkorea.or.kr
		☎ 052-714-8341-8

05

-1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관련 법령
및 고시 

-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 제19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운영 개요

훈련기관

실시기간 추가



시간표 등록



훈련생 등록



실시신고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훈련과정 운영



확정자 신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 참조)



변경 및 출석입력 요청



훈련과정 종료 후 수료보고



취업정보 등록

지방관서

실시신고 확인

확정자 신고 확인

변경 및 출석입력 요청 확인

수료보고 확인

취업정보 확인

※ 훈련비 지급은 훈련기관에서 '단위기간별 비용신청' 시 지방관서에서 '비용검토 및 지급'의 순서로 진행

출결관리

구분	세부내용
출석 체크 여부 확인	· 훈련생의 입·퇴실 출석 체크 여부를 HRD-Net 전산망에서 반드시 확인 ※ 훈련과정 시작 및 종료 후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1일 결석 ·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3]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출석입력 요청	· 카드분실/훼손, 정전, 단말기 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생이 출석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 입력 요청 - 지방관서에 출석입력요청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훈련기관은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함(별지 제18호)
훈련생 제적 (사유발생일 다음 날 제적)	·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14일 이상인 경우 적용) · 총 결석일수가 전제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처리한 경우(대신 출석 확인 행위 포함) · 소정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훈련비 지원절차

- ① 훈련과정의 훈련비 등 지급은 단위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세부내용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

※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은 기간 별도

- ②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해 마감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훈련비,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 신청 (훈련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함)
- ③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훈련장려금은 신청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 및 지급
- ④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게, 훈련장려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 수강평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미지급)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고용센터 연락처

05-2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 (사업주훈련)

관련 법령 및 고시

·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대상과정

- 사업주훈련 중 위탁훈련과정(자체+위탁과정, 원격위탁과정 포함)
- ※ 자체훈련, 자체+위탁훈련, 채용예정자훈련, 계약학과는 제외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

업무단계	주체	수행업무	비고				
훈련신청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정 훈련신청 					
	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별 규모, 지원한도, 고용보험체납여부 및 훈련생 정보 등 확인 * 신청기업의 정부지원금 계산 					
훈련실시 	훈련기관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위탁계약 체결 <table border="1"> <tr> <td>1형 : 지원금 후수납용</td> <td>2형 : 지원금 선수납용</td> </tr> <tr> <td>훈련기관은 사업주 자기부담 훈련비만 선수납 후 정부 지원금은 사후 환급</td> <td>훈련기관은 총훈련비를 선수납 후 정부지원금은 사후 사업주에 환급</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훈련비, 정부지원훈련비 구분 * 정부지원훈련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참여사업장의 규모, 지원율 등 명시 	1형 : 지원금 후수납용	2형 : 지원금 선수납용	훈련기관은 사업주 자기부담 훈련비만 선수납 후 정부 지원금은 사후 환급	훈련기관은 총훈련비를 선수납 후 정부지원금은 사후 사업주에 환급	훈련기관, 사업주의 여건에 따라 1형, 2형 중 선택하여 과정운영
	1형 : 지원금 후수납용	2형 : 지원금 선수납용					
훈련기관은 사업주 자기부담 훈련비만 선수납 후 정부 지원금은 사후 환급	훈련기관은 총훈련비를 선수납 후 정부지원금은 사후 사업주에 환급						
훈련기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생 등록, 훈련과정 관리 						
훈련비 수납 	훈련기관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형 : 사업주 자기부담훈련비 수납 • 2형 : 사업주로부터 총훈련비 수납 * 자기부담훈련비=총훈련비-정부지원금 					
수료자 확정 	훈련기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료보고 후 최종 수료자명단 확정 * 정부지원금 계산 • 지원한도, 고용보험체납여부 확인 * 1형 위탁체결의 경우, 지원인원한도 초과 시 사업주 자기부담 훈련비 추가 수납 (*참여기업의 고용보험 체납시, 한도초과시 지원불가) 					
훈련비용 신청	훈련기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신청 및 환급 * 2형 위탁계약 체결시 정부지원금 환급 후 위탁계약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사업주훈련 비용지급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훈련비용지원부(서울, 강원) 부산지역본부 훈련비용지원부(그 외 지역)
	www.hrdkorea.or.kr 연락처 1644-8000

06

훈련이수자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평가체계 구축 및 훈련생 성취도 제고”

관련법령 및 고시



-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대상 (2023년도 훈련이수자평가 기준)

- 훈련종료일이 '23. 1. 1. ~ '23. 12. 31. 인(운영회차 기준)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신청
 - 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기관**(평가의무화):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기 과정의 직종 수(국기직종 기준)에 따라 의무과정 수를 산정하며, 대상 과정은 기관이 선택하여 신청
 - ② **실업자 국기 미운영기관**: 희망기관에 한해 NCS 소분류 직종별 1과정씩 평가 신청 가능

국기 운영기관의 훈련이수자평가 의무

국기 운영기관 구분

① 국기 5개 직종 미만 운영



2023년도 훈련이수자평가 의무

국기 1과정 선택하여 평가 의무 참여

② 국기 5개 직종 이상 운영



국기 2과정 선택하여 평가 의무 참여
(단, 선택한 2과정은 국기직종이 달라야 함)

※ 평가 의무과정 이외 이수자평가 희망 시에는 직종별(NCS 소분류) 1과정씩 신청 가능(국기, 계약제 일반직종 무관)

- 2023년에 훈련이수자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과정(훈련과정ID 기준) 및 동일 국기직종은 2023년에는 평가 재참여 불가
 - 단, 2023년도 제1~8차 평가결과에서 C 또는 D등급 판정된 경우, 동일 직종(국기직종, NCS 소분류 직종) 내에서 타 과정 1개에 한하여 추가 신청 허용
- 훈련기관평가 및 우수훈련기관 선정·모니터링* 등에 훈련이수자평가 결과가 활용됨(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 참조)
 - ※ NCS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로만 편성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 신청 불가
 - ※ 평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이수자평가 계획 공고문(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1호(2022.11.30.))' 참조

관련자료 제공 및 문의

문의처

훈련성과평가센터	www.ksqa.or.kr	소통마당 > 훈련성과평가센터 > 자료실(자료제공) / Q&A(문의)
	연락처	☎ 1644-5113 연결 후 내선번호 4번

추진절차

- **(현장평가)** 평가위원 3인이 훈련기관 방문하여, 평가체계 검증 및 훈련생 대상 샘플평가를 진행 (과정별 3~5명)
*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 90점 미만, C: 70점 이상 ~ 80점 미만, D: 70점 미만(단, 평가포기 또는 행정처분 등 발생 시 F(Fail)등급 부여)
- **(서면평가)** 훈련생이 2명 이하인 경우 권장, 평가신청자료를 통해 평가체계구축에 대한 최소요건만 검토하여 적합 시 평가결과 D등급 부여
- **(결과발표)**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결과 발표
-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현장평가 절차



서면평가 절차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배점
1. 평가계획(6점)	① 평가계획이 훈련목표 및 수준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6
2. 평가실행(40점)	① 평가계획에 따라 적절히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
	② 본 평가의 평가도구는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적절한가?	35
3. 평가결과 관리(14점)	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가?	10
	② 훈련생의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있는가?	4
4. 평가결과 일치도(5점)	① 훈련기관의 내부평가와 평가위원 외부평가의 결과가 일치하는가?	5
5. 훈련생 만족도(5점)	① 훈련이수자평가 신청 과정의 훈련생 만족도	5
6. 샘플평가(30점)	① 훈련생은 훈련을 통해 능력 획득을 하였는가?	30
7. 가점(5점)	① 2022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평가도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하였는가?	5
8. 감점(-5점)	① 현장평가 당일 평가 참여도(출석률)가 높은가?	-5

추진 일정

구분		훈련종료일 범위	평가신청	현장 평가	결과 발표
평가유형	회차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1차	2023. 1. 1.~2. 7.	2022. 12. 14.~12. 20.	1월	3월
	2차	2. 1.~3. 7.	2023. 1. 2.~1. 9.	2월	4월
	3차	3. 1.~4. 7.	2. 1.~2. 8.	3월	5월
	4차	4. 1.~5. 7.	3. 2.~3. 9.	4월	6월
	5차	5. 1.~6. 7.	4. 3.~4. 10.	5월	7월
	6차	6. 1.~7. 7.	5. 2.~5. 9.	6월	8월
	7차	7. 1.~8. 7.	6. 1.~6. 8.	7월	9월
	8차	8. 1.~9. 7.	7. 3.~7. 10.	8월	10월
	9차	9. 1.~10. 7.	8. 1.~8. 8.	9월	11월
	10차	10. 1.~11. 7.	9. 1.~9. 8.	10월	12월
	11차	11. 1.~12. 7.	10. 2.~10. 10.	11월	2024. 1월
	12차	12. 1.~12. 31.	11. 1.~11. 8.	12월	2024. 2월
BHA 자체시행직종	13차	2023. 1. 1.~12. 31.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트폴리오 평가는 훈련종료일이 현장평가 기간에 포함되도록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회차 조정 가능)

※ 12차는 해당 연도 종료에 맞춰 훈련종료일 범위가 타 회차 대비 짧음에 유의

07

부정훈련관리

“직업훈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도감독 대상 선정 및 훈련품질 중심 훈련기관 점검 지원, 훈련기관의 자율적 품질관리 역량 제고, 고의적·반복적 부정기관의 명단 공표를 통한 훈련시장의 건전성 제고”

관련법령 및 고시

-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8조(지도·감독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부정훈련관리 협업체계



부정훈련관리 절차

01 지도·감독 대상기관 선정



02 지도·감독



- 훈련생 출결(출석) 확인
- 훈련 관련 서류 점검
- 위탁·인정사항 준수 여부 현장 확인
-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현장 확인
-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책임자, 부정행위자)
- 완료 후 책임자에게 위반내용 설명(강평)

03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처분

- 인정취소(계약해지) 및 위탁인정 제한
- 시정명령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
- 지원 용자 제한
- 과태료 부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평가 반영

행정처분 내용 심사·평가 반영

- 훈련기관 인증평가 반영
- 집계 원리 훈련 과정심사·평가 반영

공표제 업무 절차

공표대상기관 선정 관련 기초 자료 분석

- HRD-Net 중계서버 데이터 이용 차분내역 TFDS 등록
- 행정처분 검토 보고서 등 자료 심층 검토를 통한 공표대상 선정
- 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및 고용부 협의

공표대상자 사전통지

- 공표대상자에게 통보

의견 제출 및 검토

- 소명자료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30일)
- 소명자료 검토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요청

- 고용정책심의회 소집 요청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개 여부 심의

명단공표 확정 및 공표

- 공표대상기관 확정 통지
-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술교육대학 홈페이지 등 1년간 게시

04 예방활동

- 부정훈련 예방교육 실시
- 부정훈련 예방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부정훈련사례집, 리플릿, 포스터 등)

- 훈련기관 맞춤형 훈련품질 리포트 제작
- 훈련단계별 품질관리 가이드북 제작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부정훈련 관련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www.hrd.go.kr 연락처 ☎ 1350	
	부정훈련관리센터	www.ksqa.or.kr	> 소통마당 > 부정훈련관리 > Q&A
		연락처	☎ 1644-5113 연결 후 내선번호 5번
		이메일	✉ cita@koreatech.ac.kr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	www.hrdkorea.or.kr	
		연락처	☎ 1644-8000

check!

원격훈련기관의 훈련운영 프로세스 이해하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관리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원격훈련기관

고용부
(고용센터)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HRD-Net
회원가입 및
훈련기관 ID 신청

회원가입
신청 처리
및 ID발급

훈련기관
인증평가

emon홈페이지
가입 및 자료수집
Agent설치



원격훈련
과정심사

사전 데이터
(트리거) 점검



Agent
데이터 확인 요청



HRD-Net상
설치완료승인통보



Agent 설치완료



훈련모니터링
(훈련데이터
이상여부 확인 및
제도개선 등) 및
수료보고 시
요건 검증
(사업주 및 일부
내일배움카드 훈련)

사업주 훈련

실업자,
근로자 훈련

과정인정요건
검토



과정인정신청



과정인정
요건 검토

훈련실시신고
사항확인



HRD-Net



실시신고
확인

훈련수료보고
사항확인



훈련수료자
보고

비용
신청



비용검토 및
지급

훈련비용
지급요건 검토



훈련비용
신청

수강결과
보고



수강결과
확인

과오납 훈련비
환수



환수금액
입금

취업정보
등록



취업정보
확인

III 관련 법규 및 용어

관련 법 및 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정책, 제도, 각종 심사 평가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실업자와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모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내일배움카드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업무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관한 평가 및 인증,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 및 성과 평가, 부정훈련 방지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품질 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심사평가 관련

❖ 고속련·신기술 훈련(사업주 위탁)

산업 환경 고도화에 따라 숙련도 향상이 필요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수준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훈련

❖ 기본요건 심사

심사 신청 시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훈련기관의 신청자격, 과정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신청제한분야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심사

❖ 능력단위·교과목 평가(본 평가, 1차 평가)

훈련과정에 편성된 능력단위·교과목별로 실시하는 평가

❖ 성과적정성 심사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훈련과정 중 NCS 소분류별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훈련과정에 대하여 성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

❖ 쌍방향훈련

참여자의 얼굴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하여 화상 강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훈련

❖ 원격보조훈련

자체콘텐츠, 조달콘텐츠, 공공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웹(LMS) 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닝 콘텐츠 훈련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 원격훈련심사시스템

원격훈련과정의 심사신청,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심사자료 관리 등 심사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에서 개발·운영하는 웹 사이트

❖ 이수자

능력단위·교과목별 평가 결과가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 능력단위·교과목을 이수한 훈련생

❖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는 직업 능력 지식포털 사이트. 훈련기관 인증평가, 집체훈련 심사 등 각종 심사와 평가와 관련된 신청 및 접수, 결과 관리 등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시스템

❖ 평가체계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결과관리(평가결과 분석, 결과환류) 등 훈련과정 교육에 대한 훈련생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

❖ 학습평가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교육과정 중에 훈련생 성취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능력단위(교과목) 평가

❖ 훈련과정 신청 한도 수

주 훈련대상별로 연간 과정심사에 신청할 수 있는 훈련과정 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가직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훈련

「고용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및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 스마트훈련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우편원격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집체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실업자, 재직자, 사업주위탁 등 훈련과정을 통합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집체훈련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 혼합훈련

집체훈련과 비대면 원격훈련(원격보조훈련, 쌍방향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

IV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안내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이란?

☑ 훈련교·강사 참여 시간별 필수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구분
훈련교·강사	기초교육(2시간) ※기본교육 이수 시, 기초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연간 15일 초과 + 140시간 초과하여 강의하는 훈련교·강사	기본교육(12시간) ※전문교육, 융합교육 이수시간을 포함하여 인정

기초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기본교육	· 훈련과정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전문교육	· 강의 외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융합교육	·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근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교육대상

NCS 확인강사,
민간직업훈련기관
종사자 등



신청방법

포털(<https://hrdportal.koreatech.ac.kr>) 로그인
▶ 교육신청
▶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 교육신청 후 수강이력에서 신청결과를 확인하여 주세요.



선발확인

능력개발교육원
포털 로그인
▶ 수강이력

※ 교육신청 선착순 선발



2023년도 연간 교육일정

구분	접수기간	교육기간
1기 (교직분야)	2. 8.(수) ~ 2. 14.(화)	3. 4.(토) ~ 4. 23.(일)
2기 (전공분야)	2. 15.(수) ~ 2. 21.(화)	3. 20.(월) ~ 5. 14.(일)
3기 (교직분야)	4. 26.(수) ~ 5. 2.(화)	5. 11.(목) ~ 7. 16.(일)
4기 (전공분야)	5. 17.(수) ~ 5. 23.(화)	6. 19.(월) ~ 7. 30.(일)
5기 (교직분야)	7. 19.(수) ~ 7. 26.(수)	8. 5.(토) ~ 9. 10.(일)
6기 (전공분야)	8. 2.(수) ~ 8. 8.(화)	9. 4.(월) ~ 10. 29.(일)
7기 (교직분야)	9. 18.(월) ~ 9. 24.(일)	10. 12.(목) ~ 12. 6.(수)
8기 (전공분야)	10. 18.(수) ~ 10. 24.(화)	11. 20.(월) ~ 12. 24.(일)

※ 상기 일정은 교육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수별 상세정보는 모집기간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https://hrdi.koreatech.ac.kr	교육과정 안내, 교육신청 등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	☎ 041-521-8000(ARS 1→2)
		기초교육(전공), 융합교육	☎ 041-521-8000(ARS 1→3)

자료집 23-1-01

2023

한 눈에 알아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운영 가이드북

발행일	2023년 1월 인쇄 2023년 1월 발행
발행인	최영섭
발행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12층
홈페이지	www.ksqa.or.kr
대표전화	(02) 1644-5113
팩스	(02) 6943-4025
디자인/인쇄	착한고릴라

2023

한 눈에 알아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운영 가이드북



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매탁로타워 12층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종합민원센터

Tel 1644-5113 Email ksqa@koreatech.ac.kr Homepage www.ksqa.or.kr